

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2021. 1. 12.

양형위원회

I. 개관

1. 현행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

- 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형량범위 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 징역형 또는 금고형

[양형인자 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 동종 누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행위 자 /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등 중 전과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가. 최근 개정 경과

- ▣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 2020. 1. 16. 시행
- ▣ 2020. 6. 9. 법률 제17433호로 최종 개정, 2020. 10. 1. 시행
- ※ 2021. 1. 12. 현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 일부 사항에 대한 특별 규정 포함, 미공포)

나. 주요 내용

- ▣ 도급인에 대한 처벌 강화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죄」 도입 (7년↓, 1억 원↓)
 - 구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66조의2(사업주만 처벌) → 현행법 제167조(사업주, 도급인 처벌)
 - 종전에는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제68조 제3호; 1년↓, 1천만 원↓)으로만 기소, 처벌 가능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법정형 상향 (1년↓ / 1천만 원↓ ⇒ 3

년↓ / 3천만 원↓)

- 구법 제68조 제3호 → 현행법 제169조 제1호

■ 현행법상 처벌 규정

● 제167조 (7년↓ / 1억 원↓)

-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

● 제168조 (5년↓ / 5천만 원↓)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주요업무위반

● 제169조 (3년↓ / 3천만 원↓)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등

● 제170조 (1년↓ / 1천만 원↓)

- 그 밖에 경미한 의무위반

다. 주요 조항 비교

구법	현행법
<p>제23조(안전조치)</p> <p>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p> <p>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건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p>	<p>제38조(안전조치)</p> <p>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p> <p>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건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p>

구법	현행법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 보건조치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작업중지 등)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 조항 없음]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구법	현행법
	<p>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p>	<p>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급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p>
<p>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p>	<p>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p>

구법	현행법
<p>이루어지는 작업</p> <p>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p>	
<p>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p> <p>①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 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p> <p>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p>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p> <p>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p> <p>③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p> <p>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p>
<p>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p>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p> <p>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법	현행법
<p>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p> <p>3.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p> <p>4.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p>	<p>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p> <p>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4.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p>
<p>제37조(제조 등의 금지)</p> <p>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p> <p>2. 제3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p>	<p>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p> <p>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p> <p>2. 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p>
<p>제38조(제조 등의 허가)</p> <p>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p> <p>①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p> <p>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p>	<p>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p> <p>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p>
<p>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p> <p>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p> <p>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p>

구법	현행법
<p>② 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p>	<p>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제52조의6(비밀 유지) 지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3조(비밀 유지)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제35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제40조제1항·제6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1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자,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제48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및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 제112조제2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p>[해당 조항 없음]</p>	<p>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p>
<p>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67조(벌칙) ④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p>

구법	현행법
	<p>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p>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p>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p>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p>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 제85조제2항·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양형자료조사 결과

가. 현행법 제167조 위반 (구법 제66조의2 위반)

1)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설비, 물질, 에너지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기구, 설비), 제2호(물질), 제3호(에너지)	7년↓, 1억 원↓
작업방법 등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장소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제2호(붕괴), 제3호(물체 낙하, 비산), 제4호(천재지변)	
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원재료 등), 제2호(방사선 등), 제3호(기체 등), 제4호(계측감시 등), 제5호(단순반복작업 등), 제6호(환기 등)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본문	
현장실습생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3항, 제39조 제1항, 제63조 본문, 제166조의2	
위 각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위 각 범죄 재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 음영이 있는 부분은 종전 양형자료가 있으나, 음영이 없는 부분은 신설 범죄로 양형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이하 같음)

2) 양형자료조사 결과¹⁾

▣ 사건 분포

구법	현행법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12	9	8	14	20	63
		19.0%	14.3%	12.7%	22.2%	31.7%	100%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5	2	5	19	18	49
		10.2%	4.1%	10.2%	38.8%	36.7%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10	10	20	24	36	100
		10.0%	10.0%	20.0%	24.0%	36.0%	100%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0	0	1	0	4	5
		0.0%	0.0%	20.0%	0.0%	80.0%	100%
전체		27	21	34	57	78	217
		12.4%	9.7%	15.7%	26.3%	35.9%	100%

▣ 선고 내역

구법	현행법	실형	집행유예	전체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0	63	63
		0.0%	100%	100%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1	48	49
		2.0%	98.0%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3	97	100
		3.0%	97.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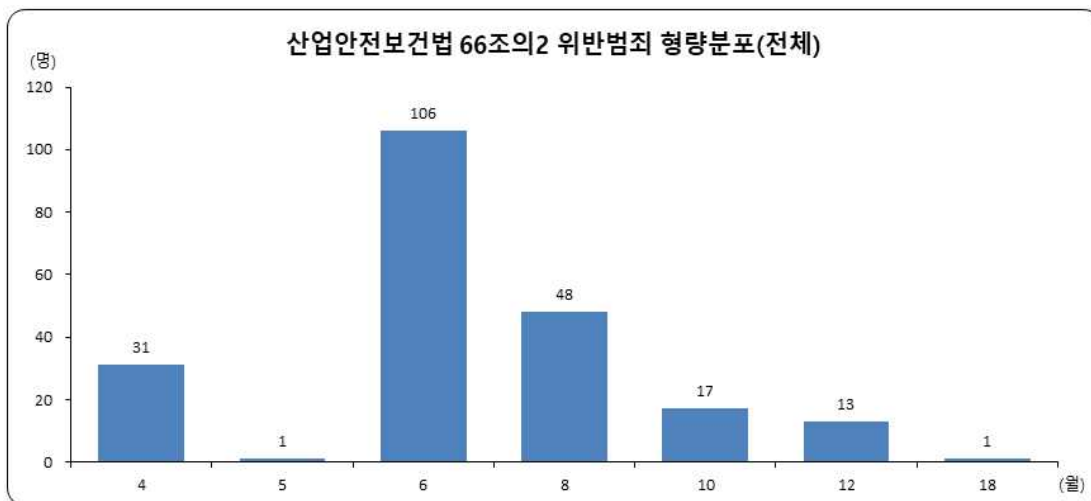
1)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선고된 단일 및 동종경합범 대상. 이하 같음

구법	현행법	실형	집행유예	전체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0	5	5
		0.0%	100%	100%
전체		4	213	217
		1.8%	98.2%	100%

▣ 형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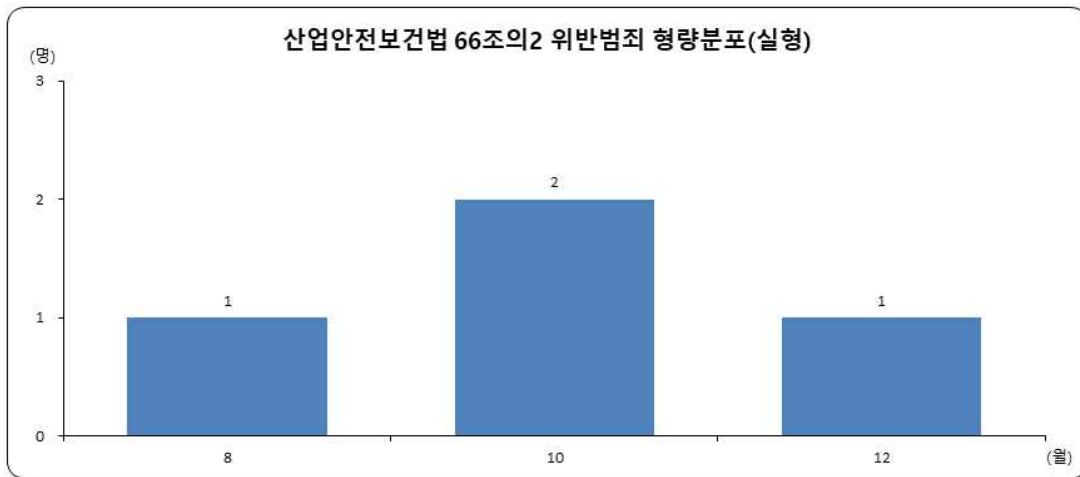
○ 전체

구법	현행법	형량(개월)							전체	평균 (개월)
		4	5	6	8	10	12	18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8	0	33	12	4	5	1	63	7.05
		12.7%	0.0%	52.4%	19.0%	6.3%	7.9%	1.6%	100%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9	0	20	13	5	2	0	49	6.82
		18.4%	0.0%	40.8%	26.5%	10.2%	4.1%	0.0%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14	0	50	23	7	6	0	100	6.82
		14.0%	0.0%	50.0%	23.0%	7.0%	6.0%	0.0%	100%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0	1	3	0	1	0	0	5	6.60
		0.0%	20.0%	60.0%	0.0%	20.0%	0.0%	0.0%	100%	
전체		31	1	106	48	17	13	1	217	6.88
		14.3%	0.5%	48.8%	22.1%	7.8%	6.0%	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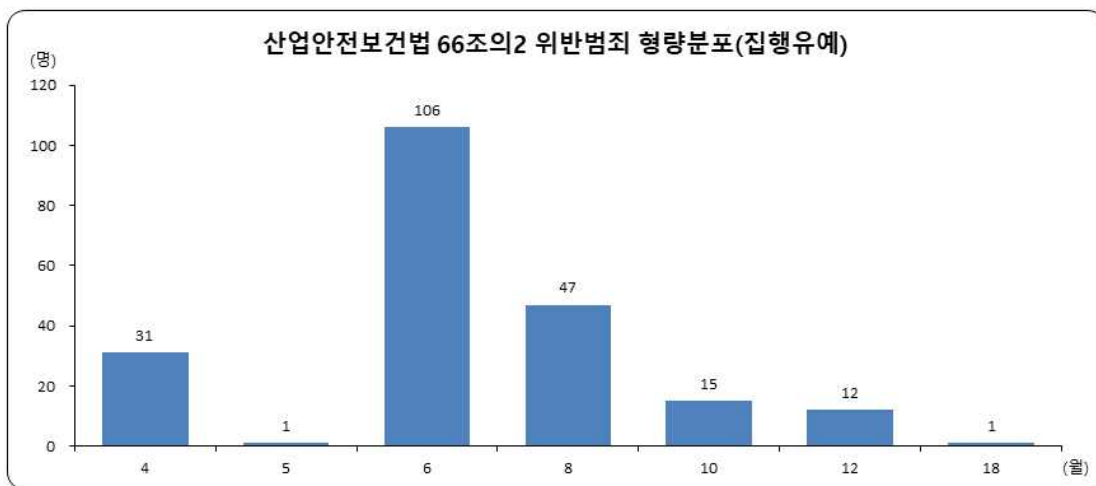
○ 실행

구법	현행법	형량(개월)			전체	평균 (개월)
		8	10	12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0	1	0	1	10.00
		0.0%	100%	0.0%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1	1	1	3	10.00
		33.3%	33.3%	33.3%	100%	
전체		1	2	1	4	10.00
		25.0%	50.0%	25.0%	100%	



○ 집행유예

구법	현행법	형량(개월)							전체	평균(개월)
		4	5	6	8	10	12	18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8	0	33	12	4	5	1	63	7.05
		12.7%	0.0%	52.4%	19.0%	6.3%	7.9%	1.6%	100%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9	0	20	13	4	2	0	48	6.75
		18.8%	0.0%	41.7%	27.1%	8.3%	4.2%	0.0%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14	0	50	22	6	5	0	97	6.72
		14.4%	0.0%	51.5%	22.7%	6.2%	5.2%	0.0%	100%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0	1	3	0	1	0	0	5	6.60
		0.0%	20.0%	60.0%	0.0%	20.0%	0.0%	0.0%	100%	
전체		31	1	106	47	15	12	1	213	6.82
		14.6%	0.5%	49.8%	22.1%	7.0%	5.6%	0.5%	100%	



나. 현행법 제168조 제1호 위반 (구법 제67조 제1호 위반)

1)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설비, 물질, 에너지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기구, 설비), 제2호(물질), 제3호(에너지)	5년 ↓, 5천만 원 ↓
작업방법 등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장소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제2호(붕괴), 제3호(물체 낙하, 비산), 제4호(천재지변)	
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원재료 등), 제2호(방사선 등), 제3호(기체 등), 제4호(계측감시 등), 제5호(단순반복작업 등), 제6호(환기 등)	
대피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51조	
중대 재해 대응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54조 제1항	
유해·위험 물질 제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17조 제1항	
유해·위험 물질의 무허가 제조,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18조 제1항	
석면 해체, 제거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22조 제1항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57조 제3항	
현장실습생 관련 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3항, 제39조 제1항, 제51조, 제54조 제1항, 제157조 제3항, 제166조의2	

2) 양형자료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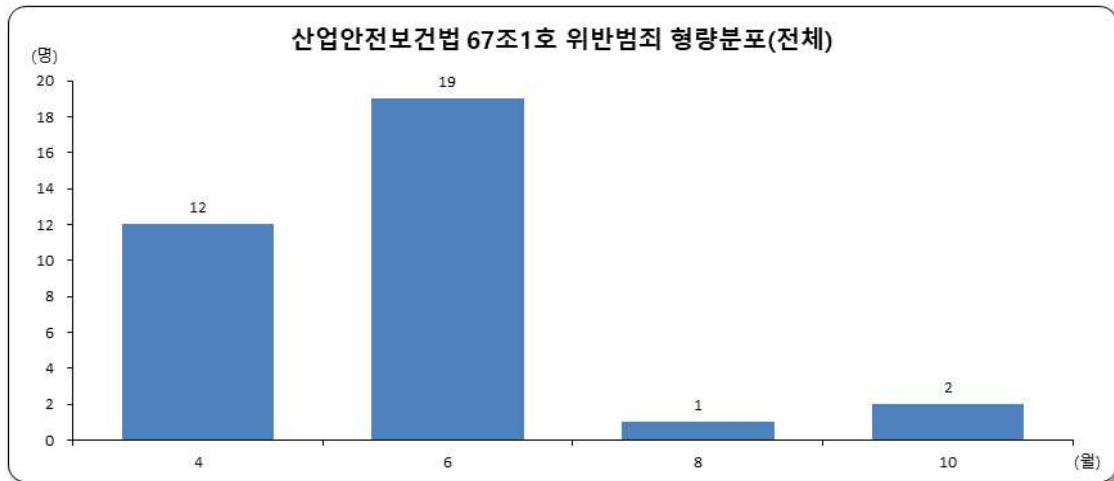
▣ 사건 분포

구법	현행법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7	4	3	3	3	20
		35.0%	20.0%	15.0%	15.0%	15.0%	100%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	2	-	-	-	2
		-	100%	-	-	-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7	1	3	-	-	11
		63.6%	9.1%	27.3%	-	-	100%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1	-	-	-	-	1
		100%	-	-	-	-	100%
전체		15	7	6	3	3	34
		44.1%	20.6%	17.6%	8.8%	8.8%	100%

▣ 형량 분포

구법	현행법	형량(개월)				전체	평균(개월)
		4	8	10	12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9	10	-	1	20	5.30
		45.0%	50.0%	-	5.0%	100%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1	-	1	-	2	6.00
		50.0%	-	50.0%	-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2	8	-	1	11	6.00
		18.2%	72.7%	-	9.1%	100%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	1	-	-	1	6.00
		-	100%	-	-	100%	
전체		12	19	1	2	34	5.59
		35.3%	55.9%	2.9%	5.9%	100%	

○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 없음



다. 현행법 제169조 제1호, 제170조 제4호 위반(구법 제68조 제3호 위반)

1)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1년↓, 1천만 원↓ 3년↓, 3천만 원↓
현장실습생 관련 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166조의2	
유해·위험 기계 등의 방호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80조 제1, 2항	1년↓, 1천만 원↓
안전인증 무단 표시·광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85조 제2항	
안전인증 임의 변경·제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85조 제3항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미신고 제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92조 제1항	
비밀유지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162조	

2) 양형자료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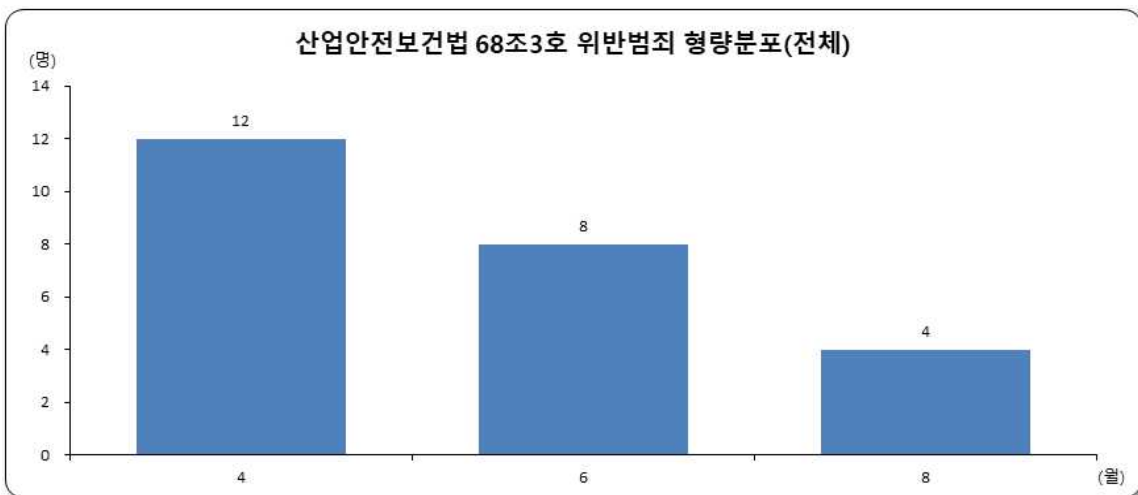
▣ 사건 분포

구법	현행법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제29조 제3항	제63조	6	5	6	2	5	24
		25.0%	20.8%	25.0%	8.3%	20.8%	100%
전체		6	5	6	2	5	24
		25.0%	20.8%	25.0%	8.3%	20.8%	100%

▣ 형량 분포

구법	현행법	형량(개월)			전체	평균 (개월)
		4	6	8		
제29조 제3항	제63조	12	8	4	24	5.33
		50.0%	33.3%	16.7%	100%	
전체		12	8	4	24	5.33
		50.0%	33.3%	16.7%	100%	

○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 없음



라. 현행법 제173조 제1호, 제170조 제4호 위반(구법 제68조 제3호 위반)

1)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 + 상당한 주의감독 해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법인인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10억 원 ↓
		개인인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상당한 주의감독 해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부터 제172조	해당 조문의 벌금형

2) 양형자료조사 결과

- 벌금형에 대하여서는 양형자료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2. 양형기준 설정범위

가. 현행법 제167조 위반(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

▣ 포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를 살리려면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에 더하여, 신설된 ① 도급인의 형사책임, ② 사망자가 근로자 아닌 현장실습생일 경우, ③ 5년 내 재범 시 가중 처벌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도 모두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새로 도입된 도급인의 형사책임, 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일 경우에 관한 양형사례는 없으나, 구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와 구성요건·법정형이 같으므로,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공유할 수 있음. 5년 내

재범 범죄는 종전 법정형 1.5배 가중 유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형기준에 반영 가능

나. 현행법 제168조 제1호 위반(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현행법 제169조 제1호 위반(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일부 포함

▣ 일부 포함 근거

-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강력하게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반드시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과 행위 태양이 비슷하고 법정형 상한만 그 3/5 수준으로 낮음을 고려하면, 사업주에 대한 권고 형량을 기초로 약간 감경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형량범위 설정 가능

▣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범위

- 다만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에는 워낙 다양한 행위 태양이 있어 그 전부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양형자료조사 결과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범죄에 한정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 설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래 표 중 음영이 있는 부분이고, 음영이 없는 부분은 설정 범위에서 제외

[현행법 제168조 제1호 위반(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구성요건	적용법조
설비, 물질, 에너지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기구, 설비), 제2호(물질), 제3호(에너지)
작업방법 등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장소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제2호(붕괴), 제3호(물체 낙하, 비산), 제4호(천재지변)
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원재료 등), 제2호(방사선 등), 제3호(기체 등), 제4호(계측감시 등), 제5호(단순반복작업 등), 제6호(환기 등)
대피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51조
중대 재해 대응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54조 제1항
유해·위험 물질 제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17조 제1항
유해·위험 물질의 무허가 제조,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18조 제1항
석면 해체, 제거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22조 제1항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57조 제3항
현장실습생 관련 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3항, 제39조 제1항, 제51조, 제54조 제1항, 제157조 제3항, 제166조의2

[현행법 제169조 제1호 위반(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구성요건	적용법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현장실습생 관련 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166조의2
유해·위험 기계 등의 방호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80조 제1, 2항
안전인증 무단 표시·광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85조 제2항

안전인증 임의 변경·제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85조 제3항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미신고 제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92조 제1항
비밀유지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162조

다. 현행법 제173조 제1호 위반(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시 양벌규정으로 법인 등 처벌) ⇨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

■ 제외 근거

-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선고 형량이 선거권·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범죄 외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음. 현재까지의 양형기준은 징역형에 대한 것으로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양형위원회는 2020. 7. 13. 제103차 회의에서 과실치사상범죄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하면서도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두었고, 그 결정을 변경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 현행법 제173조 제1호 위반(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시 양벌규정으로 법인 등 처벌)에 대해서는 양형자료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추출 시 참고할 만한 통계자료가 없음
-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 내에서도,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어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여러인데, 그 처벌 대상이 누구지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것인지, 매출 규모에 따라 처벌에 차등을 둘 것인지 등도 검토되어야 함

Ⅲ. 범죄유형 분류

1. 일반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되어야 함

2. 범죄군 명칭 변경 및 대유형 분류

▣ 범죄군 명칭 변경 방향 및 별도 대유형 분류

-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군의 명칭에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포함하고,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와 구별되는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함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중 상당수가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동반하기에 중전 과실치사상 범죄와 유사성이 있고, 양형인자의 정의 또한 상당수 공유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 범죄와 과실치사상 범죄는 실질적 연관성이 높으므로 굳이 별도의 범죄군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높지 않음. 만약 독립 범죄군으로 설정한다면, 과실치사상 범죄군과 산업안전보건 범죄군 모두 대유형이 1개에 불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고려할 필요 있음

▣ 범죄군의 구체적인 명칭과 대유형 순서

- 범죄군 명칭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로 하고, 대유형 1을

과실치사상 범죄, 대유형 2를 산업안전보건 범죄로 함

- 과실치사상 범죄가 일반범인 형법에 의한 범죄이므로, 특별법에 의한 범죄인 산업안전보건 범죄보다 명칭과 대유형에서 앞서는 것이 타당
- 과실치사상 범죄가 실제로 더 넓은 범위에서 적용될 것이므로, 범죄군 명칭에서 앞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소유형 분류

▣ 법정형/구성요건에 따라 분류

- 법정형과 구성요건을 고려하여 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징역형의 법정형 : 3년 ↓), ②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징역형의 법정형 : 5년 ↓), ③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징역형의 법정형 : 7년 ↓)로 분류
- 5년 이내의 재범의 경우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를 살려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을 둬

4.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최종 유형 분류

산업안전보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3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 현장실습생 관련 범죄는 행위 태양에 따라 제1, 2, 3유형에 포함
- ▷ 제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제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²⁾

IV. 형량 범위 검토

1. 권고 형량 범위 설정 기준

▣ 고려사항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음
- 경험적 접근방식을 기초로 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유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적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함
-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함

2. 형량 범위 검토

가. 소유형 1(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1) 형량 분포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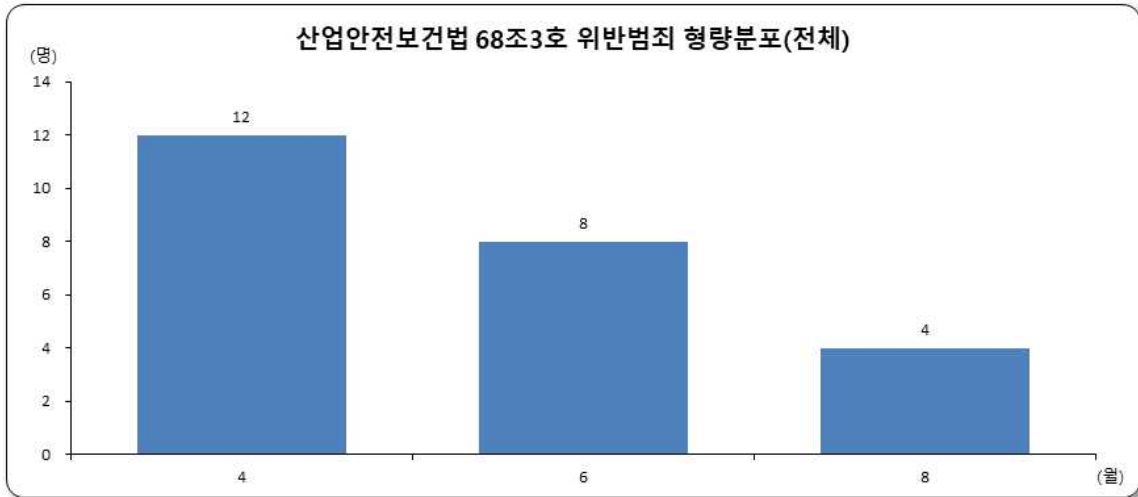
○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실형이 선고된 예는 없음

세부 조항		형량(월)			전체	평균(월)
구법	현행법	4	6	8		
제29조 제3항	제63조	12	8	4	24	5.33
		50.0%	33.3%	16.7%	100%	

2) 법정형의 1.5배를 가중하는 특정강력범죄(누범) 등과 같은 방식임[양형위원회, 2020 양형기준, 29면 등]

3)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7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 II(2020. 9. 14.)를 근거로 하되, 실제 해당 판결문을 찾아 통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오류를 수정하여 제시함. 이하 통계는 모두 같음

세부 조항		형량(월)			전체	평균(월)
구법	현행법	4	6	8		
전체		12	8	4	24	5.33
		50.0%	33.3%	16.7%	100%	



2) 법정형 동일(징역 3년 이하)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5,000만 원 미만	-6월	4월-8월	6월-1년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8월	6월-1년	8월-1년6월
		1억 원 이상	6월-1년	8월-1년6월	1년2월-2년6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이자율 제한 위반 등	-6월	4월-10월	8월-2년
	채권추심법 위반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6월	4월-10월	6월-2년
사행성·게 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등	유사경륜·경정 등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
	무허가·무등 록 영업	사행행위영업 등	-8월	6월-1년4월	10월-2년
전자금융거래 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	-6월	4월-10월	6월-1년2월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8월	6월-1년 6월	10월-2년6월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5억 원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 원 미만	-10월	6월-1년	10월-1년2월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50억 원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3)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위반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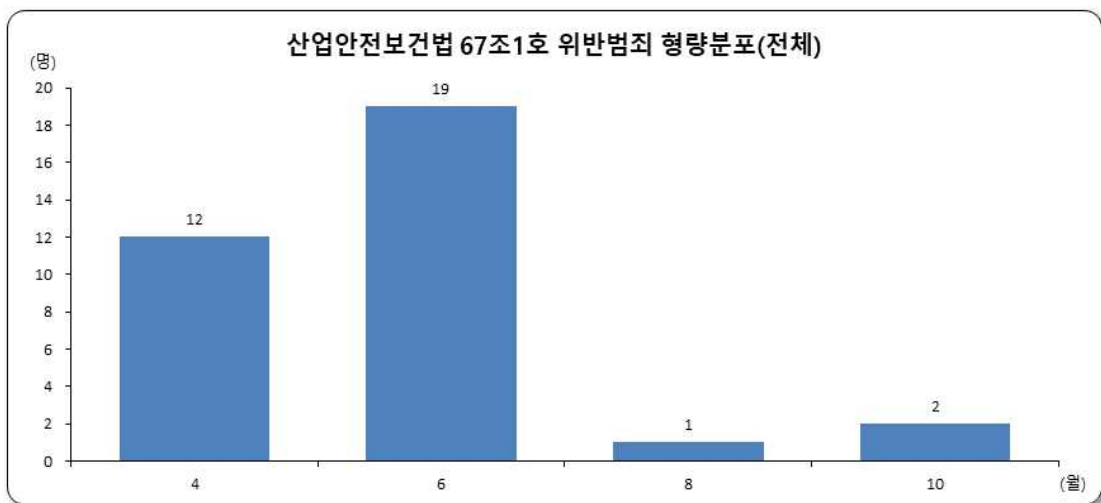
- 상향된 법정형(1년 → 3년)에 따른 양형 사례가 아직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하면서 같은 범죄군에 속하면서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서 소유형 1보다 더 높은 대유형 1 과실치사상범죄의 소유형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권고 형량범위(-6월 / 4월-10월 / 8월-2년)와의 균형을 고려함
- ① 소유형 1은 상해의 결과 발생과 무관하게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로서 만약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경합범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같은 대유형 중 소유형3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는 점, ② 대유형 1 중 소유형 2의 법정형이 더 높으므로 규범적 조정을 가하더라도 가중 영역 상한을 대유형 1 중 소유형2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③ 특별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가중영역 상한이 1/2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가중영역 상한을 1년 6월로 함

나. 소유형 2(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1) 형량 분포

○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실형이 선고된 예는 없음

세부 조항		형량(월)				전체	평균(월)
구법	현행법	4	8	10	12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9	10	-	1	20	5.30
		45.0%	50.0%	-	5.0%	100%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1	-	1	-	2	6.00
		50.0%	-	50.0%	-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2	8	-	1	11	6.00
		18.2%	72.7%	-	9.1%	100%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	1	-	-	1	6.00
		-	100%	-	-	100%	
전체		12	19	1	2	34	5.59
		35.3%	55.9%	2.9%	5.9%	100%	



2) 법정형 동일(징역 5년 이하)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	-----	-----	----	----	----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과실치사상 범죄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	-6월	4월-10월	8월-2년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	4월-10월	8월-2년	1년-3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8월	4월-1년	8월-2년
		교통사고 치사	4월-1년	8월-2년	1년-3년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강제근로·중 간착취 등	강제근로·중 간착취 등	-8월	6월 -1년	10월 -2년6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미등록 대부업 등	-10월	6월-1년 6월	1년-4년
	채권추심법위 반	폭행, 협박 등 행위	-8월	6월-1년 6월	10월-3년 6월
변호사법위 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3,000만 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6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1년	8월-1년6월	1년-2년6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2년	1년-2년6월	2년-3년6월
		1억 원 이상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석유사업법 위반범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5만 리터 미만	-6월	4월-10월	8월-1년6월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
		50만 리터 이상	8월-1년6월	1년-3년	2년-4년

3)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위반	4월 - 8월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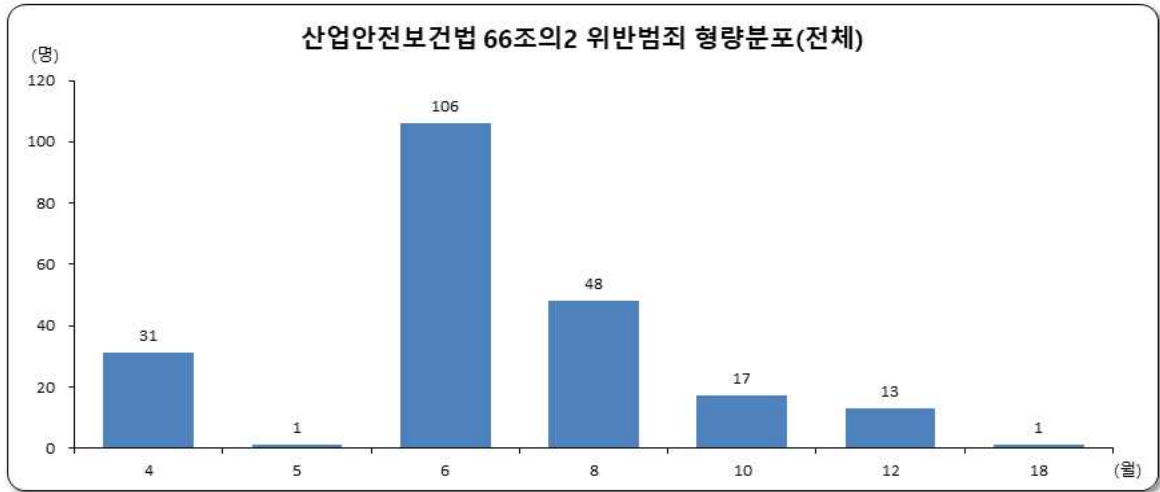
- 같은 범죄군에 속하면서 법정형이 동일한 대유형 1 과실치사상범죄의 소유형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권고 형량범위(-6월 / 4월-10월 / 8월-2년)를 참고하되, 같은 대유형 중 법정형이 낮은 소유형 1과의 차등 필요성,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유형 1 중 소유형 2의 권고 형량범위를 전체적으로 상향함
- ① 소유형 2 역시 상해의 결과 발생과 무관하게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로서, 만약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경합범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같은 대유형 중 소유형3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는 점, ② 특별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가중영역 상한이 1/2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가중영역 상한을 2년 6월로 함

다. 소유형 3(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1) 형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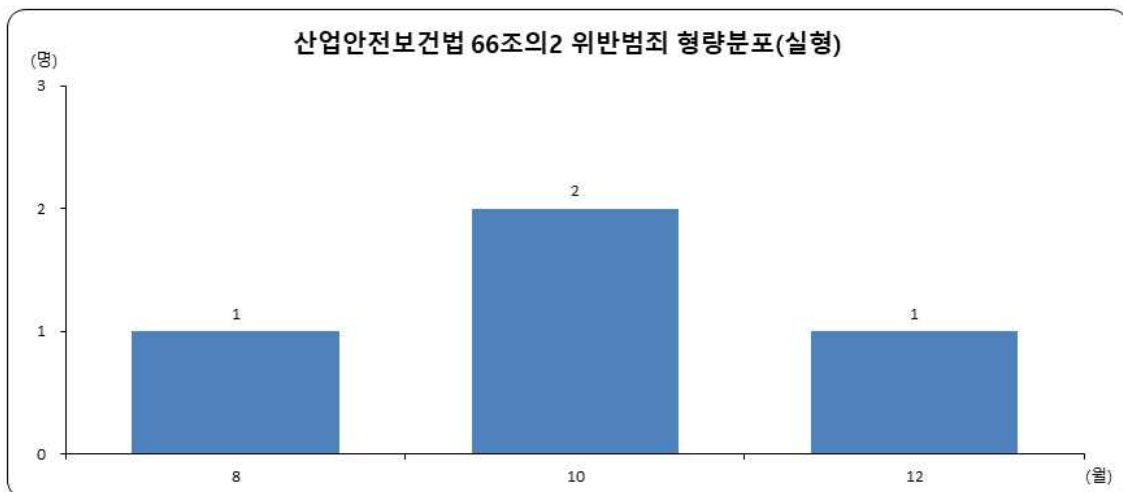
▣ 전체

세부 조항		전체 형량(월)							전체	평균(월)
구법	현행법	4	5	6	8	10	12	18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8	0	33	12	4	5	1	63	7.05
		12.7%	0.0%	52.4%	19.0%	6.3%	7.9%	1.6%	100%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9	0	20	13	5	2	0	49	6.82
		18.4%	0.0%	40.8%	26.5%	10.2%	4.1%	0.0%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14	0	50	23	7	6	0	100	6.82
		14.0%	0.0%	50.0%	23.0%	7.0%	6.0%	0.0%	100%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0	1	3	0	1	0	0	5	6.60
		0.0%	20.0%	60.0%	0.0%	20.0%	0.0%	0.0%	100%	
전체		31	1	106	48	17	13	1	217	6.88
		14.3%	0.5%	48.8%	22.1%	7.8%	6.0%	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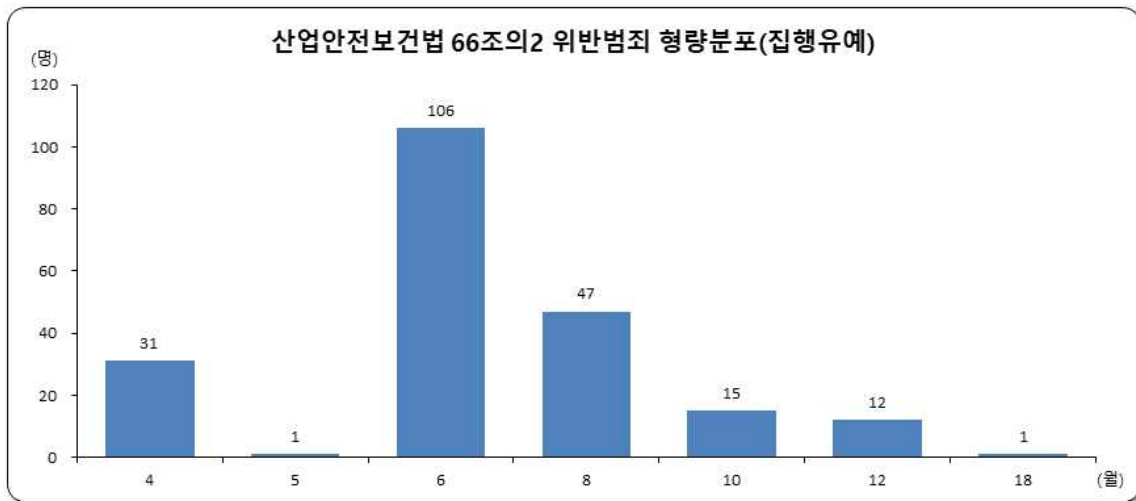
■ 실형

세부 조항		실형 형량(월)			전체	평균(월)
구법	현행법	8	10	12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0	1	0	1	10.00
		0.0%	100%	0.0%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1	1	1	3	10.00
		33.3%	33.3%	33.3%	100%	
전체		1	2	1	4	10.00
		25.0%	50.0%	25.0%	100%	



■ 집행유예

세부 조항		집행유예 형량(월)							전체	평균 (월)
구법	현행법	4	5	6	8	10	12	18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8	0	33	12	4	5	1	63	7.05
		12.7%	0.0%	52.4%	19.0%	6.3%	7.9%	1.6%	100%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9	0	20	13	4	2	0	48	6.75
		18.8%	0.0%	41.7%	27.1%	8.3%	4.2%	0.0%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14	0	50	22	6	5	0	97	6.72
		14.4%	0.0%	51.5%	22.7%	6.2%	5.2%	0.0%	100%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0	1	3	0	1	0	0	5	6.60
		0.0%	20.0%	60.0%	0.0%	20.0%	0.0%	0.0%	100%	
전체		31	1	106	47	15	12	1	213	6.82
		14.6%	0.5%	49.8%	22.1%	7.0%	5.6%	0.5%	100%	



2) 법정형 동일(징역 7년 이하)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과실치사상 범죄	-	산업안전보건 법위반	4월-10월	6월-1년6월	10월-3년6월
권리행사방 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4월-1년	8월-1년6월	1년-3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변호사법위 반범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 무 취급·동 업 등	1,000만 원 미만	-4월	2월-8월	6월-1년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4월-8월	6월 -1년	10월-2년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1년6월	10월-2년	1년-3년6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2년6월	1년6월-3년6 월	2년6월-5년
		1억 원 이상	2년-4년	3년-6년	4년-7년
사행성·계 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사스포츠도 토	4월-1년	8월-2년	1년6월-4년

3)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안전·보건조치의무위 반치사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참고 : 기존 권고 형량범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만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되도록 함
-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종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에 상당한 규범적 조정을 가하여 보다 더 엄정한 형량범위를 권고
- 현행 기본 영역의 권고 형량범위(6월-1년6월)는 소유형3보다 법정형이 낮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5년 이하 징역)의 기본 영역상 권고 형량범위(8월-2년)보다도 낮으므로 상향 필요
- 소유형 3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가중 영

역의 권고 형량범위의 폭을 다소 넓혀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한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아가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법정형 상한(7년)이 완전하게 포섭될 수 있도록 함

라. 요약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4월 - 8월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 ▷ 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V. 양형인자

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 ▣ 과거에 실제로 선고된 판결을 분석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를 추출하고 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함. 양형인자를 추출하거나 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규범적인 고려 요소도 적절하게 반영함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가. 대유형 1 과실치사상 범죄

1) 검토 필요성

- 기존 과실치사상범죄군에 포함되어 있던 산업안전보건범죄가 별도의 대유형으로 독립하면서, 대유형1 과실치사상 범죄와 대유형2 산업안전보건 범죄는 별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하게 됨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범죄와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범죄의 경합범이 되므로, 대유형 1 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도 적용됨. 이에 따라 대유형 1 과실치사상 범죄에도 산업안전보건 범죄와 관련된 양형요소를 존치하여야 할 뿐 아니라 대유형 2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양형인자에 관한 논의 중 공통되는 부분을 대유형 1 과실치사상 범죄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 수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군의 양형인자 중 표현을 수정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함

2) 양형인자 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중 변경 부분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삭제 및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정의 규정 수정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이외의 사정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연관된 것을

의미하는 사후적 평가 개념임. 따라서 양형 과정에서 반드시 양자를 분리하여 취급할 필요는 없음

- 오히려 특별가중인자보다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많고, 통계상으로도 특별감경인자 적용이 빈번하여 감경 영역에 치우쳐 있으므로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 특별감경인자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함
-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용어를 양형인자에서 사용하는 현재의 표현 방식은 사고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를 탓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삭제하고, 그 정의 규정의 내용을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흡수 반영함.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수정된 정의 규정은 다음과 같음(추가된 부분은 강조 표시)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로서 공동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대부분의 범죄에서 ‘농아자’가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로 규정되어 있음

- 최근 개정된 형법(2020. 12. 8. 공포, 2021. 12. 9. 시행 예정)에서는, ‘농아자’ 를 대신하여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또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비록 개정 형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에서 사용되는 양형인자의 표현을 순화한다는 의미에서 개정 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선도적으로 사용함

※ 개정 형법(2021. 12. 9. 시행 예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실질적 피해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범죄 중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정의를 참고하여, 정의 규정 수정(수정된 부분은 강조 표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또는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보험 가입

- 현재 정의 규정에 예시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은 해당 보험과 무관한 사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정의 규정을 수정(변경된 부분은 강조 표시)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자동차종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아래와 같은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기존 정의 규정 중 ‘심한 추상 장애’ 부분은 한글로만 적혀 있어서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우므로, ‘추상’에 한자를 병기함
- 수정된 정의 규정(추가된 부분은 강조 표시)

○ 치료 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醜相) 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나. 대유형 2 산업안전보건 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	○ 동종 누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지한 노력 포함)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반 양형인자	행위		
	행위자 /기타	○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대유형 1 과실치사상 범죄와 동일한 양형인자는 별도 설명이 없는 한 대유형 1 일반적 기준에서의 양형인자 설명이 그대로 적용됨

1)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 양형기준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양형인자로 반영
-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범행에 관한 서술식 기준은 두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특성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사업주 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는 범행이 일어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움
 - 식품·보건범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 대부업법·채권추

심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등의 양형기준에서도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여 마찬가지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범행에 관한 서술식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수, 내부 고발’에 관하여는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로 반영함
- 기업범죄 양상을 떨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범죄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함.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자수, 내부 고발’과 동등하게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2) 특별가중인자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대유형 1(과실치사상범죄)에서는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표현되나, 대유형 2(산업안전보건범죄)에서는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루므로, ‘주의의무 또는’이라는 표현은 불필요
- 양형인자의 정의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고유한 부분인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항만으로 구성하면 충분함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한 경우
- 면허 등 법정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별도의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동종 누범’, ‘이종 누범’ 과 같은 양형인자 이외에도 범죄전력의 질적인 면을 양형요소로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 있음
- 특히,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가 중대하므로 이를 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결과적인 불법이 무거운 것으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동종 누범

- 폭력, 손괴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3) 일반감경인자

▣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 산업재해 재발 방지 조치로서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음

▣ 진지한 반성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4) 일반가중인자

-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존재하는 양형인자를 그대로 반영함

VI. 집행유예 기준

1. 과실치사상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

2. 산업안전보건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지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보험 가입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 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